

V.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

1. 2020. 7. 20 부터

구 分	취 득 재 산		채무상환	총액한도
	주 택	기타 재산		
30세 미만	5천만원	5천만원	5천만원	1억원
30세 이상	1.5억원	5천만원	5천만원	2억원
40세 이상	3억원	1억원	5천만원	4억원

※ 근거규정 :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2조(2025.6.11. 국세청훈령 제2618호)

2. 2018. 4. 2 부터

구 分	취 득 재 산		채무상환	총액한도
	주 택	기타 재산		
1. 세대주인 경우 가. 30세 이상인 자 나. 40세 이상인 자	1억5천만원 3억원	5천만원 1억원	5천만원	2억원 4억원
2.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. 30세 이상인 자 나. 40세 이상인 자	7천만원 1억5천만원	5천만원 1억원	5천만원	1억2천만원 2억5천만원
3. 30세 미만인 자	5천만원	5천만원	5천만원	1억원

※ 근거규정 : (구)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8조

3. 2014. 6. 1 이후

구 分	취 득 재 산		채무상환	총액한도
	주 택	기타 재산		
1. 세대주인 경우 가. 30세 이상인 자 나. 40세 이상인 자	2억원 4억원	5천만원 1억원	5천만원	2억5천만원 5억원
2.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. 30세 이상인 자 나. 40세 이상인 자	1억원 2억원	5천만원 1억원	5천만원	1억5천만원 3억원
3. 30세 미만인 자	5천만원	5천만원	5천만원	1억원

※ 근거규정 : (구)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31조